

2018년 춘계학술발표회

춘계학술발표회 및 이사회

-사실(fact), 팩트 체크 그리고 사회과 학습-

일 시 : 2018년 4월 28일(토) 11:00~17:00

장 소 : 춘천교육대학교 대학 본관 1층 대회의실

주 최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주관 및 후원: 춘천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소



KASE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2018년 춘계학술발표회 및 이사회

일시: 2018년 4월 28일 (토) 11:00 ~17:00

장소: 춘천교육대학교 대학 본관 1층 대회의실

등록 및 개회식 (13:00~13:45)

▣ 등 록(13:00~13:30)

▣ 개회식(13:30~13:45)

사회: 류현중(제주대)

▪ 국민의례

▪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박용조(학회장, 진주교대)

주제 발표 및 토론 (14:00~17:00)

▪ 주제발표(14:00~15:40)

사회: 곽병현(창원남산초)

<주제1> 미투 운동, 구조적 인권침해 그리고 인권교육

발표: 장원순(공주교육대학교)

<발표자 간 대화 1>

<주제2> 팩트 체크를 넘어 관점 체크로

발표: 박승규·홍미화(춘천교육대학교)

<발표자 간 대화 2>

▪ 휴식 (15:40~16:00)

▪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16:00~17:00)

사회: 허수미(한국교원대학교)

2018 정기 이사회 (11:00~12:00)

장소: 춘천교육대학교 대학 본관 1층 대회의실

2018년

순계악술발표의

<주제발표 1>

미투 운동, 구조적 인권 침해 그리고 인권교육

/ 장원순(공주교대) 1

<주제발표 2>

팩트 체크를 넘어 관점 체크로

/ 박승규 · 홍미화(춘천교대) 22

<토론 1>

주제 발표에 따른 토론문

/ 유종렬(공주대) 31

<토론 2>

주제 발표에 따른 토론문

/ 이태성(세종국제고) 34



MEMO

미투 운동, 구조적 인권 침해, 그리고 인권교육

장 원 순
공주교육대학교



목 차

- I. 서론
- II. 미투 운동 발생의 구조적 원인 분석
- III. 한국사회에서의 여성 성폭력과 인권 침해
- IV. 여성 성폭력에 저항하는 인권교육 접근법
- V. 결론

미네르바 올빼미는 황혼 무렵에 날아오른다(헤겔).

I. 서론

한국사회에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성희롱 폭로 이후, 최영미 시인의 '괴물 E'이라는 시를 통한 고은 시인의 성희롱 폭로, 연극계 이운택의 성폭행 폭로 그리고 조민기 교수의 성희롱 폭로 그리고 안희정 전충남도시사의 성폭행 폭로로 이어지며, 미투 운동은 검찰, 문학, 연극, 교육, 행정을 넘어 한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미투 운동은 그 동안 한국사회에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던 여성에 대한 끝없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한국사회의 성 불평등 구조,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미시적, 구조적 권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 미투 운동의 한국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멈칫 외면하고 싶지만, 시각을 바꾸어 보면 미투

운동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의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시각과 더불어 현재 미투 운동에 대하여 몇 가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는 김어준의 주장으로 미투 운동은 진보를 죽이기 위한 정치 조작이라는 주장이다(중앙일보, 2018년 3월 6일자, 이데일리, 2018년 3월 12일자). 둘째, 미투가 과도하게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덕여대 교수였던 소설가 하일지는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한겨레, 2018년 4월 22일자). 손펜은 미투 운동을 “갓난아이들 십자군 전쟁”에 비유하였다(뉴스1, 2018년 3월 30일자). 캐나다 소설가 앳우드는 “비효율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률 시스템을 무시해 버리고 나면 무엇이 (법을) 대체하겠는가? 누가 새로운 파워 브로커가 되겠는가” 하고 자문하며, “제도를 통해 공정한 심판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도구, 즉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이 문화적으로 공고화된 린치 무리 습관으로 변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드뇌브는 미투 운동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단순한 비난이 처벌과 사임, 미디어 린치로 이어지는 시대”라고 비판했다(뉴시스, 2018년 1월 16일자).

이러한 논쟁을 넘어 미투 운동이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미투 운동 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포함한다. 첫째는 사건 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일이며, 두 번째는 사건의 재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실 미투 운동은 일종의 사회 운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운동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사회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의 규명 및 원인 탐색을 위해서는 구조적 접근이 요청된다. 즉 단편적 사실 확인으로는 사회 문제 발생 원인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미투 운동은 일종의 규범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즉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며, 이는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논쟁을 포함한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규범적 기준은 보편적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규범적 기준이 편파적이거나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할 경우 논란은 종식되기보다는 더 크게 확대 재생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투 운동과 관련된 규범적 판단과 대책 마련의 기준으로 인권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투 운동 발생의 구조적 원인과 미투 운동과 연관된 다양한 인권 침해들을 살펴본 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인권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미투 운동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미투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본 학회의 주제와 관련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미투 운동 발생의 구조적 원인 분석

사회 문제는 대개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는 일종의 천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기 때문이다. 사회를 이루는 이러한 씨줄과 날줄의 결합을 흔히 사회구조라고 부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문제는 대부분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체인 사회구조의 산물이다. 특히나 이렇게 오랫동안 공공연히 지속되어온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의 경우, 매우 복잡한 사회구조의 산물일 경우가 매우 높다. 그렇다면 미투 운동 발생의 사회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관련 요인들과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사건 발생의 기저 요인: 성적 욕망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인 중 하나는 성(sex), 성적 욕망의 존재 문제이다. 이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준다. 첫째, 사건 발생의 기저에 성적 욕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적 욕망이 없었다면 성적인 희롱과 추행 그리고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사건 발생에 남녀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둘째, 사건 발생의 근본 요인이 되는 성적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의 자아는 이드(id), 에고(ego), 수퍼 에고(superego)로 구성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중에서 이드는 일종의 욕망의 저수지이고 대부분 성적 욕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성적 욕망은 끝없이 무의적으로 분출한다. 이를 조절하는 것은 그 사회의 도덕을 대변하는 수퍼 에고(superego)이다. 그리고 에고(ego)는 이를 현실성에 맞게 조절한다. 따라서 프로이트에 따르면 성의 문제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자(글로벌 뉴스통신, 2018년 3월 7일자). 그러자 누군가 이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누구의 표현이 보다 적절한가? 프로이트에 따르면 후자의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즉 성의 문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규율하고, 현실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한 사회에 성적 욕망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조절하며 승화하는 기제가 있다면 성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성은 해당 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한국 사회에서 성적 욕망은 원활히 건전하게 해결되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성적 욕망은 자극되고 있는가? 아니면 절제되거나, 승화되고 있는가? 물론 드라마와 소위 막장드라마가 유행하고, 야한 동영상도 너무도 쉽게 유포되고, 매춘이 불법화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현실에서 성적 욕망이 절제되거나 승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권력의 비대칭성: 성폭력은 왜 여성에게 집중되는가?

그런데 엄격히 말해 성적 욕망은 남녀 공통의 문제이므로 사건은 사실 쌍방향적이어야 한다. 즉 여성 성폭력과 동시에 남성에게 대한 성폭력이 존재해야 했다. 사실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성폭력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사건 발생의 수와 정도를 고려하면 이것이 얼마나 비대칭적인지를 알 수 있다. 왜 그러할까? 왜 여성에게 대한 성폭력의 문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존재하는가? 이 비대칭성을 많은 부분 결정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1) 권력의 의미와 성격

막스 베버에 따르면 권력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권력의 핵심은 그것이 무엇이든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의미에서 권력은 법과 윤리, 도덕, 가치관, 사회구조, 관행 등을 넘어선다. 그래서 옹거는 권력을 다루는 정치를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이라고 정의한다(옹거, 2015).

권력은 관계적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지배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지배자가 된다. 지배자는 권력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피지배자에게서 얻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흔히 권력에 취한다. 즉 그 자신에 대해 잘못 판단한다. 자신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자신이 이 나라를 구했다고, 짐이 곧 국가라고 말이다. 권력에 취한 자는 자신의 언어를 권력의 언어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즉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 되고, 피지배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정해준다. 그래서 안희정 전충남도지사는 김지은씨에게 “스위스와 러시아의 아름다운 풍광만을 기억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조선일보, 2018년 3월 5일자).

권력은 매우 작은 것, 미시적인 것에서부터 법을 초월할 수 있는 대권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권력은 가정에도 작은 마을에도, 교실에도, 친구관계에도, 연인관계에도, 국가에도, 세계에도 존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권력자는 연인관계에서도, 친구관계에서도, 동아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실에서도, 학교에서도 국가에서도 세계에서도, 하다못해 자아에서도 존재한다. 즉 권력은 인간살이 어디에나 존재한다.

2) 권력의 비대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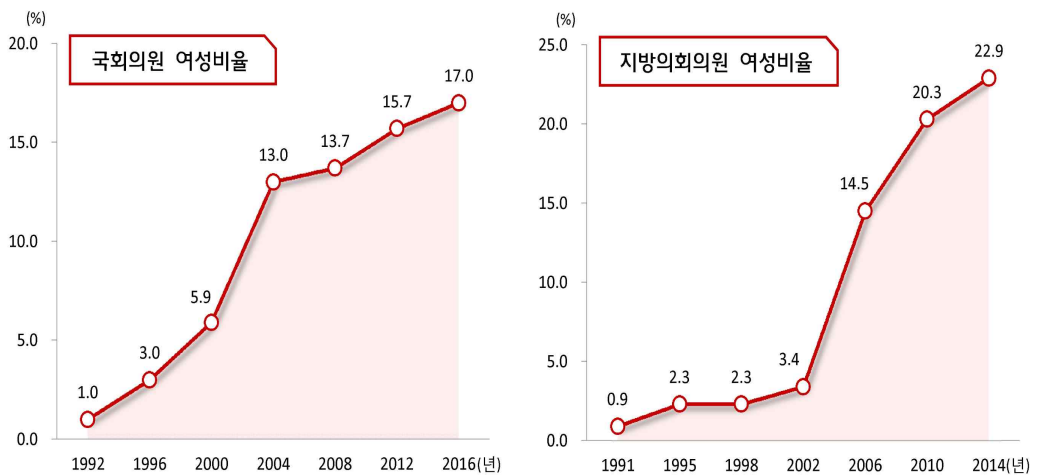
그렇다면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권력의 출처는 다양하다. 대표적인 권력의 출처로는 완력, 돈, 지위, 지식, 외모, 법 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권력은 많은 부분 비대칭적이다. 즉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하여 적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왜 그러한가? 먼저 육체적 힘에 의한 것이다. 즉 여성은 남성에게 비하여 육체적 힘이 약하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하여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서도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먼저 경제력의 차이를 살펴보자.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상용근로자 비중은 44.7%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53.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임시근로자 비중은 여성(27.5%)이 남성(1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 41.0%가 비정규직인데 이는 남성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26.4%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관리자 중 여성비율은 2006년 10.2%에서 2016년 20.1%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1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월평균 임금은 186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8만8천원 증가하였으나 남성 임금의 64.1% 수준에 해당한다(통계청, 2017).

다음으로 정치권력의 차이를 살펴보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의원 300명 중 여성의원은 51명으로 17.0% 차지하였다. 2014년 제6회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총 의원 3,687명 중 여성의원은 845명으로 22.9%에 해당한다(통계청, 2017).

[도표 1]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서 여성비율



미투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성적 욕망이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권력이 비대칭적으로 남성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남성은 권력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는 권력이 많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지향하는 문화도 그리고 이를 제멋대로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문화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너무도 많은 남성들이 자신에게 편향되게 부여된 권력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할 것임에 틀림없지 않은가? 더구나 이 상황에서 권위에 순응하는 타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더 가속화 될 것임에 틀림없다. 김지은씨는 말한다. “그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고”.

3. 미시적 지배 장치들: 문화와 교육 그리고 언론

성적 욕망은 추동하고 권력의 비대칭성은 성적 욕망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흐르게 만든다. 그런데 밀은 말한다. 남성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를 기대한다고(Mill, 1982). 그렇다면 대체 피지배자의 자발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는 아마도 모종의 장치를 통해서이다. 아감벤은 장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 존재자를 일반적이고 대대적으로 두 개의 커다란 집단 혹은 부류로 분할할 것을 제안한다. 그 분할의 한쪽에는 생명체들(혹은 실체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들을 끊임없이 포획하는 장치들이 있다.....푸코가 말하는 장치는 이미 아주 넓은 부류인데 이것을 더 일반화해 나는 생명체들의 몸짓, 행동, 의견, 담론을 포획, 지도, 규정, 차단, 주조, 제어, 보장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장치라고 부를 것이다, 따라서 감옥, 판옵티콘, 학교, 교회, 공장, 규율, 법적 조치 등과 같이 권력과 명백히 접촉되어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펜, 글쓰기, 문학, 철학, 농업, 담배, 항해(인터넷 서핑), 컴퓨터, 휴대전화 등도 그리고 (왜 아니겠는가 마는) 언어 자체도 권력과 접촉되어 있다. 언어는 가장 오래된 장치인지도 모른다. 수 천 년 전도 전에 영장류는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는 아마 알지도 못한 채로) 무심코 언어라는 장치에 포획됐다(아감벤, 2010: 33).”

그렇다면 미투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을까?

1) 문화 기제: 분류와 권위주의

먼저 문화를 들 수 있다. 문화는 은연중에 남녀에 대한 분류 도식을 생산하고 재생산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남자는 대개 정치, 밖, 힘, 적극, 태양 등으로 분류되며, 여성은 일반적으로 경제(가사), 육아, 안, 온순, 아름다움, 달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도식은 여성의 삶을 규정, 지도한다. 즉 분류도식은 여성은 정숙하고 아름다워야 하며, 가정경제를 맡고 육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성을 지도한다. 이에 비하여 남성은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밖에서 활동해야 하며,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여 지도한다(부르디외, 2003).

정수복 박사는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에서 한국 문화의 중요 특성 중 하나로 권위주의를 든다(정수복, 2007: 142-148). 그는 한국의 조직사회 구성원은 나이와 직급 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지배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비판한다(정수복, 2007: 142). 그리고 그는 한국사회는 지나치게 성인 남성 중심주의 사회이며, 한국사회는 50대 남성이 여성과 노인, 젊은이를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한다. 성폭행, 성희롱, 매매, 촌, 가정폭력을 비판하는 여성운동이 거세진 이유는 그만큼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심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말한다(정수복, 2007: 143).

2) 교육 기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장치는 교육기제이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학교 급훈들이다. 여기서도 부르디외가 발견한 분류도식이 발견된다.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달라진다”. “칠판을 원빈처럼, 교과서를 강동원처럼”, “칠판이 남자다”.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 “공부하자! 신량이 바뀐다”.

대체 여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그녀가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한 남편을 얻는가? 여자들은 왜 잘 생긴 남자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얼굴이 못생기면 왜 문제가 되는가? 위에 제시된 급훈들에는 여성은 그 자체로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남자에 의해 대리된다는 생각과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는 현재 몇몇 대전소재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의 교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대전 소재 남녀 고등학교의 교훈

대전 남자 고등학교 교훈	대전 여자 고등학교 교훈
1. 근면, 용기, 보은 2. 큰 꿈, 뜨거운 열정, 끝없는 도전 3. 발전하는 일꾼이 되자 4. 자립, 단정, 독행	1. 성실, 창의, 현숙 2. 정숙, 명량, 성근 3. 정의와 진리와 사랑을 위하여 몸 바칠 여성 4. 어질고 옹음을 슬기로

위의 표는 남자고등학교는 주로 근면, 용기, 열정, 도전, 발전, 일꾼, 자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자고등학교는 주로 성실, 창의, 현숙, 정숙, 명량, 성근, 정의, 진리,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교훈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3) 언론: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의 사례

한국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장치는 언론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18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하나로 3월 TV 예능·오락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3월 1일(목)부터 7일(수)까지 1주일 간 방송된 지상파 3사·종합편성채널 4사·케이블 2사의 예능·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상위프로그램 총 33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3월 예능·오락프로그램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내용은 총 56건으로, 성평등적 내용(7건)의 8배에 달했고, 전년도 7월 모니터링에서 집계된 성차별적 내용(19건)과 비교해도 3배가량 늘었다. 성차별적 내용은 주로 성별 고정관념이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이었다(한국양성평등교육원, 2018).

[표 2]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성 평등적 내용	주체성	2(28.6%)	성 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28(50%)
	현실 반영성	1(14.3%)		출산의 도구로서의 여성	-
	다양성	2(28.6%)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7(12.5%)
	대안성	2(28.6%)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2(3.6%)
				외모지상주의 조장	9(16%)
			여성의 성적대상화	3(5.4%)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한 사용	3(5.4%)	
			선정성	4(7.1%)	
합 계		7	합 계	56	

4. 주조된 몸과 영혼

권력은 위와 같은 장치들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조한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은 사회적 몸(social body)가 된다. 울스턴크래프트는 그녀의 저서 여권의 옹호에서 성차별적 구조에서 주조되는 여성의 몸과 영혼을 잘 제시하고 있다.

“여자 아이들은 여성의 자랑인 아름다운 용모를 보전하기 위해 중국의 전족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신체와 지성의 발달을 방해받고, 남자 아이들이 밖에서 뛰노는 동안 집안에만 갇혀 사는 바람에 근육이 약화되고 신경이 쇠약해지는 것이다(울스턴크래프트, 2014: 92).”

“내가 아는 한 나약한 숙녀는 자신의 섬약함과 감성에 유난히 긍지가 있었다. 그녀는 높은 안목과 형편없는 식욕을 인간의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했고 그에 따라 했다(울스턴크래프트, 2014 : 95).”

“여성의 처지는 어디서나 비참하다. 무지함을 듣기 좋게 표현한 소위 순수함을 보전하기 위해 여성은 지적능력이 성숙하기도 전에 진실 대신 가식을 배우게 된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름다움이 여성의 최고 가치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은 육체에 자신을 맞추게 되고, 금빛 새장에 갇힌 채 그 안을 치장하는데 정성을 쏟게 되는 것이다(울스턴크래프트, 2014 : 96).”

“남편에게 비이성적으로 복종하며 일정한 원칙 없이 사는 이들은 아이들이나 하인들에게 내키는 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굴레 아래 신음하는 이들이 때로 아랫사람들에게 그 굴레를 씌우며 거기서 악랄한 즐거움을 얻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울스턴크래프트, 2014 : 102).”

울스턴크래프트에 따르면 남성 중심적 권력구조에서 여성은 지성 대신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지성과 신체의 발달을 소홀히 한다. 그리고 이성보다는 감성과 섬약함을 중시하고, 형편없는 식욕을 가치롭게 여긴다. 무지함을 듣게 좋게 표현한 순수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남성이 만든 세장에 간혀 치장하는데 온 정성을 쏟는다. 그리고는 아랫사람에게는 멋대로 행동한다.

Ⅲ. 한국사회에서의 여성 성폭력과 인권 침해

그렇다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가져오는 구조는 어떠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이를 위하여 먼저 인권의 정의와 종류를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침해되고 있는 인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권: 모두가 존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으로 필자는 인권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는 흔히 오해되고 있듯이 편파적이고 서구중심적인 것은 아닌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인권의 세 가지 정의

인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인권은 크게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적 정의(보편적) 정의이다.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이다. 이에 따르면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기본 권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천부의 권리, 인간이기 때문에 부여된 기본 권리이다(Flowers, 2000: 3). 이러한 정의는 인권에 대한 가장 손쉬운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에는 인권의 보편성 즉 인권은 국적, 계급, 인종, 성, 성적 취향, 지역,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다는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서는 인권은 하늘이 부여하고, 태어나면서 본래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박탈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또한 잘 표현되어 있다.

둘째, 분석적 정의(학문적 정의)가 있다. 분석적 정의는 인권이라는 용어의 두 측면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규정한 정의들이다. 인권이라는 용어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인간(Human)이며, 두 번째는 권리(rights)라는 용어이다. 먼저 권리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권리는 옳다(right), 정당하다(just)하다는 의미와 자격(entitlement)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권리는 최고의 패, 으뜸패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권리는 법, 헌법,

도덕, 관습, 효용, 규정, 지시 이 모든 것보다는 우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권리는 권리관계를 포함한다. 권리는 권리소유자(rights holder), 권리의무자(rights bearer), 권리내용(content of right)의 관계를 갖는다. 권리소유자는 권리내용을 가지며 주장할 수 있다. 권리소유자는 인간으로, 국적, 인종, 계급, 성, 지역,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무관하게 인간이면 누구나 권리를 갖는다. 권리의무자는 우선적으로 국가와 국제기구(정부간 기구)이다. 권리의무자는 권리내용을 권리소유자를 위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권리내용은 크게 시민 및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문적 권리로 구분된다. 이들은 분리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넷째, 권리는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권리(주장)소멸을 지향한다. 이를 권리의 패러독스(right's paradox)고 한다(Donnelly, 1989: 9-11).

다음으로 인권에서 인간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자. 그런데 이는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른 의미를 갖는다. 먼저 갈통(Galtung, 1994: 57)은 인간(human)을 인간의 필요(human need)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에게 인권이란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자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누스바움(Nussbaum)은 인간을 인간의 잠재력, 능력으로 해석한다(Nussbaum, 2011: 33-34). 따라서 그녀에게 있어서 인권이란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자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도널리와 그 외의 많은 학자들은 인간을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는 인권을 기본 권리들을 제도화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능성에 대한 특정한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정의한다(Donnelly, 1989: 18). 인권에 대한 학문적 정의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인간을 인간의 존엄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적으로 인권이란 인간이 존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자격을 의미한다.

세 번째 정의는 인권을 일종의 정치적 도덕성(political morality)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인권을 일종의 정치적 도덕성으로 정의하는 학자로는 폴만과 멩케(2012) 그리고 니켈(2007)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도덕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인권을 일종의 사회구성의 청사진으로 보는 것이다. 인권을 정치적 청사진으로 볼 때 인권이 추구하는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이며, 모든 인간이 타인의 차별과 간섭을 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회이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사회이며,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면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이들과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2) 인권의 분류와 논쟁

인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분류 방법은 권리들을 시민 및 정치적 권리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고 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두 개의 규약, 즉 국제자유권규약과 국제사회권규약이 만들면서 유행하게 되었다.

[표3] 인권의 분류

분 류	하위 권리들
시민 및 정치적 권리 (세계 인권선언 제1조 -제21조)	제1조 인간 존엄권, 제2조 평등권, 제3조 생명권, 신체의 자유, 안전권 제4조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의 금지, 제5조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 금지, 제6조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제7조 법 앞에 평등,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제8조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 제9조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 금지, 제10조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제11조 유죄로 입증되기 전 무죄 추정의 권리(1항), 소급 형벌의 금지(2항), 제12조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서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명예와 명성에 있어서 비난 받지 않을 권리, 제13조 이동 및 거주 자유, 제14조 피난하거나 명명할 권리 제15조 국적을 가질 권리(1항),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국적을 변경할 권리(2항), 제16조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1항), 결혼, 결혼기간, 이혼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2항), 가정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3항), 제17조 혼자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1항),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2항), 제18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19조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 제20조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21조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정부에 참여할 권리(1항),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 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권(2항)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제22 조-제27조)	제22조 사회보장의 권리 제23조 일할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서 보호받을 권리(1항),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의 권리(2항),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의 보장,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3항),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4항), 제24조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는 휴식과 여가의 권리, 제15조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1항),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2항), 제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교육의 의무와 무상, 접근이 용이한 기술 및 직업교육, 고등교육에 대한 실력에 근거한 동등한 접근(1항),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타인 존중(2항),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부모의 권리(3항), 제27조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1항),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2항)

인권에 대한 주장 중 하나는 인권이 정치적 좌파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자유주의 세계와 사회주의 세계가 유일하게 합의하여 만든 문서이며, 세계인권선언에는 이 둘의 언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조효제, 2011). 인

권에 제기되는 두 번째 주장은 인권이 서구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는 맞는 주장이지만, 온전히 그러한 것은 아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많은 부분 서구적 근원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생각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포함된 양심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중국의 피씨 창 의 주장에 의하여 포함된 것으로 동양적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

2. 인권침해의 두 측면: 표면적 인권침해와 구조적 인권침해

그렇다면 미투 운동과 관련된 여성 성폭력은 위에 제시한 어떠한 인권들 중 어떠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를 두 층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표면적 인권 침해이며, 다른 하나는 구조적 인권 침해이다.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표면적 인권 침해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인권 침해는 ‘신체의 자유’ 침해이다. 신체의 자유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가두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의 신체를 허락 없이 함부로 접촉을 하는 모든 행위는 모두 신체의 자유 침해가 된다. 미투와 관련된 신체의 자유 침해는 크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희롱이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은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2) 구조적 인권침해

미투를 표면적 인권 침해의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면 인권 침해는 대부분 신체의 자유 침해로 한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인권 침해를 가져오는 요인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을 하나 하나는 다시 다양한 인권 침해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신체의 자유 침해’는 사실 숨겨진, 구조적 인권 침해의 명시적 표현체 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명시적 인권침해 이면에, 그 하위에 존재하는 구조적 인권 침해에는 무엇이 있는가?

먼저 정치적 권리 침해가 있다. 미투 발생은 많은 부분 남성 중심적 권력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의 초기 출발은 완력의 차이에서 근거하였으나 이는 점차 사회적 권력 차이로 변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위반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민중(people)의 의지는 정부 권위의 기초가 되며, 이는 주기적이고 참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즉 세계인권선언 제21조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대한민국 통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의 의지가 대한민국 정부 권위

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성의 의지를 대변하고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현재 여성 국회의원의 수 및 정부 관료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통계청, 2017).

둘째, 여성은 많은 부분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다. 그리고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면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이는 해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여성은 채용 자체와 승진에서 차별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가사노동은 많은 부분 여성에게 맡겨져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인권선언 제2조 평등권(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과 세계인권선언 제23조 노동권의 제2항(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을 위반한다.

셋째, 여성은 문화생활에서 차별을 받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의하면 2015년 1년 동안 여성 1인 가구가 문화와 예술을 관람한 비율은 42.0%로 남성 1인 가구 58.8%보다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2017).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문화권(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을 위반한다.

넷째, 여성은 교육에서 차별을 받는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은 인성의 온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고의 급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학생들은 정숙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키워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육은 인성의 온전한 발달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교육권 제2항을 위반한다.

IV. 여성 성폭력에 저항하는 인권교육 접근법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인권침해를 낳는 여성 성폭력에 대항하는 인권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를 위한 접근법과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의 방향 : 개인과 사회구조 변화

Felisha Tibbitts는 인권교육접근법은 크게 가치와 앎/사회화 접근법, 책무성/전문직 개발 접근법, 능동/변형적 접근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들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Tibbitts, 2017: 85).

[표 4] 인권교육모델

모델 특징	가치와 삶/사회화	책무성/전문성개발	능동/변형
지지 기관 및 단체	대체로 정부기관 또는 당국	정부기관과 시민사회조직, 때때로 둘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짐	대체로 시민사회단체
학습참여 유형	대체로 비자발적임	자발 및 비자발적임	대체로 자발적임
교육영역	공식적 교육영역	공식 및 비공식 영역	대체로 비공식영역(청소년 및 지역사회개발 포함)
대상 집단	학생, 때때로 일반대중	법집행관(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공무원, 의료 및 사회복지사, 교육자	소의 집단, 청소년
비판적 자세	무비판적 자세	전문영역에서 인권위반과 관련하여 비판적 역할	사회 또는 지역환경, 권력의 성격, 인권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자세,
교육 방향	정보의 전달	직무 및 책임과 관련된 능력개발	개인적 변형, 인권운동, 사회변화
주요 내용	일반적인 인권이론, 역사 그리고 내용(때때로 학습자의 권리에 관심)	집단과 관련된 인권내용, 국가의 인권보호기제, 전문직의 행위 규범	학습자와 관련된 인권내용, 학습자의 권리와 현재의 인권위반.
인권규범과 기준의 활용	긍정적인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규범의 참조와 일반적 활용	전문 집단에 적절한 규범과 기준의 선택적 활용(개인적 가치에 대한 호소 포함)	학습자에게 적절한 규범과 기준의 선택적 활용(개인적 가치에 대한 강한 호소 포함)
교수·학습 전략	교훈적에서 참여적 까지	참여적에서 도구적 권능화 까지	도구적 권능화에서 본질적 권력 화까지/변형적
인권위반 방지전략	수동적: 인권담론의 사회화와 정당화	역동적/대행사(agency): 전문직의 역할에 인권의 가치와 기준 적용	역동적/변형: 분석틀에의 통합, 공사 모든 영역에서 인권위반을 줄이기 위한 행동, 집단적 행위 및 사회변동형성에의 참여

그녀에 따르면 가치와 삶/사회화 접근법은 주로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주로 개별적인 인권 항목들과 인권의 역사 그리고 중요 인권문서들이 된다. 교육은 주로 교훈적인 방법과 참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인권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책무성/전문직 개발 모델은 주로 공식적인 교육기관과 시민사회와 같은 비공식적인 기관에서 법집행관(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공무원, 의료 및 사회복지사, 교육자들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

이 대하는 특정 집단 사람들과 관련된 인권 내용과 국가인권보호기제와 전문직의 행위규범 등이다. 교육은 주로 참여적인 방법과 도구적 권능화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직무 및 책임과 관련된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능동/변형모델은 주로 시민사회와 같은 비공식적인 기관에서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청소년 등과 같은 소외집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주로 소외집단 사람들과 관련된 인권내용과 그들과 관련된 현재의 인권쟁점 및 위반들이다. 교육은 주로 도구적 권능화에서 본질적 권능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방어하고 증진할 수 있는 능력의 형성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 성폭력에 저항하는 인권교육 접근법은 세 가지 접근법 모두와 관련되어 있으나, 이중 가장 크게 관련되는 접근법은 능동/변형적 접근법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 형성과 우리 함께 여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사회 형성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성폭력에 저항하는 인권교육의 대상은 우선 피해자인 여성이며, 이와 더불어 남성을 포함한 일반 대중, 그리고 여성 관련 전문직 종사자와 교육자들로 확대된다.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학교 및 정부기관과 같은 공식기관과 여성관련 시민단체와 같은 비공식기관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된 교육내용은 여성의 권리, 여성인권발달사, 여성인권 관련 문서(여성차별방지협약), 여성인권보호기관 및 기제 그리고 현재 여성인권 문제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 성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여성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저항하고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여성 성폭력을 가져오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얽힌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전자가 여성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후자는 사회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후자에서 인권교육의 대상은 여성을 넘어 남성을 포함한 일반 대중, 여성 관련 전문직 종사자, 교육자로 확대된다.

2. 인권교육내용과 방법

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하위 내용과 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주체성과 자유권의 강화

우선 여성들 스스로 남성권력에 의하여 형성된 왜곡된 여성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동안 여성에게 부여된 억압적 이미지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들이 단지 아름다움, 정숙, 순수함, 성실, 현숙, 사랑 등의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이를 넘어서 자립, 도전, 성취, 이성, 용기,

정의, 진리 등과 같은 가치들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동안 주로 여성들에게 맡겨져 온 육아, 요리, 가정경제, 세탁, 청소 등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며, 남성과 여성이 공유해야 할 일임을 인식하고 이를 평등하게 분배하여 시행할 수 할 있도록 교육한다.

위와 같은 왜곡된 이미지에서 벗어난 이 후에는 여성들 스스로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달라진다.”, “공부하자! 신랑이 바뀐다.”가 아니라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나의 직업이 달라진다.”거나 “공부하자 나의 능력이 달라진다.”로 바꾸도록 생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삶에서 남편이나 자식을 뒷바라지 하면서 대리만족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 자신의 삶의 이상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자유권의 강화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 ‘신체의 자유’이다. 즉 남성이 여성이 허락 없이 그녀를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접촉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이며, 여성의 ‘신체의 자유’ 침해임을 인식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정하는 연습을 또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자신의 의복, 머리 스타일을 정해 보는 연습을 해본다. 그러나 이때 의복이나 머리 스타일을 정함에 있어서 무비판적으로 유행이나 욕망에 따르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2) 평등권 교육: 고정관념과 편견, 잘못된 관행을 넘어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많은 부분 다양한 차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선적으로 노동현장에서의 임금 및 승진에서의 차별, 정치권력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많은 부분 권력의 비대칭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문화생활과 교육에서 차별은 여성이 스스로 주체적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권력의 비대칭성을 당연시하도록, 더 나아가 정당화하여 왔다.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방지해 내기 위해서는 일상적 삶에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평등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평등권 교육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을 구분하는 일이다. 채용과 승진은 관련 업무 능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출신학교나 지역 또는 나이, 성, 종교 등으로 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부분 고정 관념 또는 편견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여성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하여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여성은 재산이 없으므로 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전자는 고정관념 및 편견과 관련되어 있으며, 후자는 여성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않은 이전의 잘못된 관행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평등권 교육에서는 합리적 차별과 비합리적 차별을 구별하는 능력, 고정 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능력, 이전의 잘못된 관행을 간파하는 능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권력의 정당한 사용 능력: 법과 민주주의 교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성폭력을 이룬바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많은 부분 권력이다. 권력은 그 자체 정의상 권력자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준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남성을 포함하여 여성들도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운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이 부여되면, 너무도 많은 이들이 권력을 남용한다. 권력을 일종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 종속관계를 낳는다. 이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갑질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아파트 주민의 갑질, 항공사 임직원의 승무원에 대한 갑질, 지도교수의 석, 박사 학생에 대한 갑질, 한국 노동자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 종속관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정당한 지배와 부당한 지배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체가 되는 연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당한 지배와 부당한 지배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정당한 지배는 많은 부분,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역할과 계약으로 규정된 업무에서 벗어난 일을 권력으로, 위계로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 사용이며, 부당한 지배이다.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이 여교사에게 수업을 보다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여교사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사람들에게 권력의 정당한 사용법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당한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가장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정당성은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면서 피치자의 동의에 따라 권력을 사용될 때 정당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치자의 동의와 합의에 따라 사용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분담한다고 하자. 여자라는 이유로 가사노동을 여자에게 전담하도록 한 다거나,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다.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분담할 때는 가정 구성원 모두가 모여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하에 그 역할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는 상탈 무폐와 에르네스트 라클라우가 제시한 급진 민주주의를 또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상탈 무폐와 에르네스트 라클라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다양한 요인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 접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난후, 부적절하게, 부당하게 형성된 정체성의 측면을 찾아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본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과의 결합(접합)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이들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합을 시도하여 보도록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과 남성의 결합도 항상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4) 문화를 통한 미시적 지배를 넘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 성폭력은 많은 부분 문화를 통하여 은연중에 유지되고 지지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의 문제와 여성 차별과 배제를 지지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육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성적 욕망과 이를 해결하는 기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성적 욕망은 부추겨 지고 있는가? 아니면 절제 또는 승화하도록 하고 있는가? 만일 전자라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학생들과 토론해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국사회의 불륜 및 막장드라마의 문제, 선정적인 노래와 춤의 문제, 포르노의 확산 문제 등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미시적인 문화들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당연히 하는 문제를 하나 학생들과 토론해 볼 수 있다. 즉 왜 여성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과 결혼하는가?, 반대로 남성은 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과 결혼하는가? 이러한 결혼 양식은 왜 생겨나게 되었으며, 왜 지속되고 있는가? 이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5) 사회구조 분석과 변화를 위한 교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성적 욕망을 부추기는 미디어, 정치권력에서의 여성차별과 배제, 노동에서의 여성차별과 배제,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강요하고 가사노동을 전담하도록 하는 문화 등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발생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성폭력을 낳는 이러한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요청된다.

여성 성폭력을 낳는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능력 형성을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사회과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장원순에 따르면 다차원적인 사회과학적 상상력은 크게 구조적 사고, 역사적 사고, 인류학적 사고, 정치적 사고, 문화적 사고로 구성된다. 구조적 사고는 사회구조와 제도를 이루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들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결합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고는 이러한 구조는 언제 형성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형성된 후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추동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인류학적 사고는 이러한 구조에 적합한 인성구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인성구조는 무엇인가?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인가? 유리한 인성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불리한 인성구조는 어떻게 억압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정치적 사고는 차별적이고 배제적이며 억압적인 사회구조 및 제도와

밀접히 연관된 세력은 누구인가? 어느 세력이 그 구조와 제도를 만들었는가? 이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문화적 사고는 이들을 가능하게 하고 지지하는 지식과 의미체계는 무엇인가? 이들에 반대되는 의미와 가치체계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장원순, 2015: 41).

즉 이러한 다차원적인 사회과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여성 성폭력의 역사적 기원과 흐름, 이와 연관된 인성 구조, 이를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정치, 경제 구조, 이를 유지하고 지지하는 지식과 의미체계 등을 찾아내고 이들을 변화시켜 나아가 위한 다차원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V. 결론

한국 문화를 비판하는 용어 중 하나로 ‘냄비 근성’이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1948~50년과 1958~63년, 한국이 격변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했던 그레고리 헨더슨은 한국정치를 ‘소용돌이 정치’라고 표현한 바 있다. 즉 그는 한국사회의 사회집단들이 작은 단위로 분열되어 있다가 모두가 중앙을 향해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물론 헨더슨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언급하고자 한 것이지만 이는 일정 부분 문화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미투 운동이 소위 냄비처럼, 소용돌이처럼 급속히 끓어오른 후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차분히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이를 꾸준히 시행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투 운동 발생 원인은 한국사회의 구조 문제, 즉 성적 욕망, 권력, 문화와 교육, 고용 및 대의 구조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냄비처럼 한번 끓어오름이나 한 번의 소용돌이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투 문제의 해결은 성적 욕망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문화의 형성 문제, 미시적인 권력의 배분과 사용 문제, 고용관행과 대의구조 변화 문제, 세대 간 대화와 문화 변동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합의한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이를 기준점으로 앞에서 제기한 한국사회에서 성적 욕망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문화의 형성 문제, 미시적인 권력의 배분과 사용 문제, 고용관행과 대의구조 변화 문제, 세대 간 대화와 문화 변동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건립, 경제와 정치영역에서의 쿼터제 등과 같은 제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 능력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도 또한 요구된다. 전자가 많은 부분 정치인들의 과제에 속한다면, 후자는 우리, 민주시민교육자들의 과제이다. 우리, 민주시민교육자는 여성들에게 크게 “With You” 라고 외치고 교육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진정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필자에게 ‘사실 확인’이라는 말은 민주시민교육자들이 국가가 정해주는 교육과정의 틀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를 보고 이에 대응하라는 말로 들린다. 언제나 학자가 읽어야 하는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현실 사회이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사회를 읽고 스스로 읽고, 정확히 그에 답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미흡하지만 필자가 이 글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다.

〈 참고 문헌 〉

통계청.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글로벌뉴스통신. 2018년 3월 7일. 우원식, “안희정,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뉴스스. 2018년 1월 16일. 캐나다 저명 소설가 앳우드도 ‘미투’비판 역풍.

뉴스1. 2018년 3월 30일. 손펜, 미투운동 비판...“갓난 아이들 십자군 전쟁”.

이데일리. 2018년 3월 12일. 기어준, ‘미투-공작 가능성’ 또 언급...“MB가 사라지고 있다”.

조선일보. 2018년 3월 5일. 안희정 UN 인권회의의 참석 후 성폭행 “스위스 풍경만 기억하라”.

중앙일보. 2018년 3월 26일. 안희정 성폭행 의혹에 재조명된 김어준 미투 공작 예언.

한겨레. 2018년 4월 22일자. ‘성추행·성희롱 논란’하일지 교수, 피해주장 학생고소.

아감벤,조르조.(2010). 정치란 무엇인가?: 장치학을 위한 서론. 서울: 난장.

웅거,로베르트(지). 김정오(역)(2015). 정치: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 서울: 창비.

장원순(2015). 구조적 폭력에 대응하는 인권교육 접근법. 사회과교육, 54(2), 33-47.

정수복(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서울: 생각의 나무.

조효제(2011). 인권을 찾아서: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서울: 한올아카데미.

한국양성평등교육원(2018). 성차별 범람하는 TV 예능·오락프로그램: 영평원, 3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 발표.

Bourdieu, Pierre.(1998). *La Domination Masculine*, Paris: Seuil. 김용숙(역)(2003). 남성지배, 서울: 동문선.

Donnelly, Jack.(1989).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Flowers, Nancy et al.(2000).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Minneapolis: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 Galtung, John.(1994). *Human Rights in Another Key*. Cambridge; Polity Press.
- Menke, Christoph., Pollman, Amd. *philosophie de Manschenrechte zur Einfuhrung*. Hamburg: Junius Verlag GmbH. 정미라, 주정립(2012). 「인권철학입문: 정치적·도덕적 경험에 비추어 본 인권의 철학적 문제들」. 21세기북스.
- Mill, John Stuart.(1982). *On Liberty*. Indianapolis: Bobbs-Merill Educational Publishing. 서병훈 (역)(2010). 「자유론」. 책세상.
- Nickel, JamesW.(2007).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조국 (역)(2010). 「인권의 좌표」. 명인출판사.
- Nussbaum, Martha C.(2011). *Crating Capabilities: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Osler, Audrey. (2016). *Human Rights and Schooling: An Ethical Framework for Teaching for Social Just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Tibbitts, Felisa L.(2017). “Evolu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Models”. Monisha Bajaj(2017)(ed). *Human Rights Education: Theory, Research, Praxi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69-95.
- Wollstonecraft, Mary.(1988).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1792)*. New York: W. W. Norton. 손영미(역) (2014). 「여권의 옹호」. 서울: 연암서가.

팩트 체크를 넘어 관점 체크로

박승규 · 홍미화

춘천교육대학교

목 차

- I. 서론
- II. 팩트체크, 사실의 차원을 묻다
- III. 개념체크, 개념과 맥락의 관계를 이해하다
- IV. 관점체크, '바라보는 방식'을 의심하다
- V. 결론

I. 서론

팩트(fact)는 '이미 만들어진 사실'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 누구나 봐도 의심할 수 없는 팩트가 '이미 만들어진 사실'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팩트를 객관적 사실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팩트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알랭 드 보통은 몇 해 전에 펴낸 『뉴스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대부분의 언론사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뉴스를 보도하지만, 정작 언론사마다 보도하는 뉴스의 성격은 다르고, 관점 또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매일같이 생산되는 뉴스가 객관적인 사실임을 부인할 순 없지만, 뉴스 가운데 어떤 내용을 선택하는 지, 혹은 어떤 것을 길게 보도하는 지 등은 뉴스의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뉴스에는 관점이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팩트를 체크한다는 것은 단지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를 넘어선다. 팩

트에 대한 객관적 차원의 증명을 넘어, 팩트를 누가 선정했고, 왜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지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사실에 대한 옳고 그름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전제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들 가운데 어떤 요소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고, 어떤 요소는 배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특히,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인식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사회과에서 팩트에 대한 논의는 사실을 넘어 관점을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주제 발표에서는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팩트와 관련 개념의 일부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체크를 시도하고, 그와 더불어 관점에 대한 체크가 필요함을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팩트에 대한 검증은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개념이나 관점에 관한 논의는 그것이 교과서라 할지라도 다툼의 여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발표 또한 발표자의 관점이 반영된 체크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논쟁의 여지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학술대회에 참여한 많은 참여자들의 논의가 이어질 것인 희망한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관점체크가 이루어지는 논의의장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아마도 이 월례학술대회를 시도하는 이유지 않을까?

II. 팩트체크, 사실의 차원을 묻다

1. 경관과 건축물에 대한 오류

교과서에는 다양한 사진 자료와 여행기를 통해 건축물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다. 이 설명들 중에는 서술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맞는가와 같은 의심되는 서술 부분이 다수 등장한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때, 건축물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사례를 들어 몇 가지의 팩트를 체크해보자.

우선, 3-1학기 교과서 43쪽에는 계단식 논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학생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계단식 논’이라는 경관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기로 하자. 교과서에서는 계단식 논으로 농사를 짓는 이유가 물이 산에서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관이라고 서술한다. 농사를 짓는데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서술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짓는 이유는 물의 사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형적인 요소가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바닷가 해안 마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다량이 논이라고 할 정도로 산비탈에 달려있는 논들을 보자. 농사를 지을 땅이 적었기에 이 같은 논들은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다. 즉 땅이 중력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논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등고선의 형태 그대로

토지를 개간하거나, 안식각을 이용한 개간을 통해 농지를 확보한 것이다.

천수답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수리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계단식 논에서 계단식으로 논농사를 짓는 이유가 단지 물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기술된 경우는 문제가 있다. 생존을 위해 협소한 땅 조차도 이용하고자 하였기에 그곳에서 농경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삶, 그 삶은 지형적인 요소를 설명함으로써 가능하다.

두 번째 사례는 6-2학기 우리나라와 이웃한 나라를 살펴보는 부분이다. 사회교과서 91쪽에는 서윤이가 일본을 여행하며 경험한 여행기를 적고 있다. 여행기 서술 내용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호류 사가 기억에 남는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서술은 마치 ‘호류 사’라는 사찰이 하나의 건축물인 것처럼 인식된다. 호류 사는 사찰 이름이므로 건축물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전체를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오류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곤도(金堂)가(이) 호류 사에 있는 것은 맞지만, 호류 사 자체가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단 교과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도 호류 사를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적고 있어서 그러한 오류가 그대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드나들며 검색하는 포털 사이트가 그러한 서술을 팩트로 인식한다는 것은 집단 지성의 책임이다.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반추하고 고민하는 힘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지명, 오류 아닌 오류

사회교과서에는 유독 지명이 많이 등장한다. 사실 지명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관련한 사례를 들어 확인하기로 한다. 6-1학기 교과서에는 우리나라의 4극을 지칭하는 지명이 나온다. 이때 우리나라의 서쪽 끝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비단섬’이라고 기술된 부분이 있다. 문제는 이곳을 비단섬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북한식 지명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우리는 이곳을 마안도라 부른다. 황하를 중국식으로 황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그 나라의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북한의 지명을 붙이는 방식이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담아내는 것일까? 그렇다면 문제는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지명에 북한의 이념이나 사상을 담아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그 지명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된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지명을 북한이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이름을 바꾸었고, 그렇게 바뀐 지명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이나 지명이 갖고 있는 지역성의 문제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살펴보면 비단섬은 1965년에 압록강 하류의 섬들인 마안도, 말도, 장도 등의 섬을 연결하여 인공적으로 명명한 섬이다. 비

단섬의 가장 서쪽에는 마안도(신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의 가장 서쪽 끝 섬의 지명, 마안도를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최근에 발간된 국가 지도집에서는 우리나라 서쪽 끝은 표현할 때, ‘마안도(비단섬)’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사용해왔던 지명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인다. 국가지도집을 발간하는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해왔던 지명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곳을 어떻게 부를까’ 라는 논의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팩트 체크의 대상이 아닐까 싶다.

Ⅲ. 개념체크, 개념과 맥락의 관계를 묻다

개념은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교과서에는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옥과 관련한 교과서의 사례를 들어 이 점을 호기있게 보자.

5-1학기 사회교과서 66쪽에는 대청에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전라남도에도 있는 할아버지 집에 놀러간 민우가 한옥을 보면서, 마주하게 되는 방과 방사이의 나무를 깔아 만든 곳을 대청이라고 칭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 지역은 양반 촌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남 윤씨 집안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경상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양반 가옥을 이곳에서는 보기가 어렵다.

대청은 신분의 상징성과 권위성을 나타내는 장소로,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나 가신을 모시는 장소로 이용된다. 종가 집이나 제사를 모시는 장손 집안에서 의례를 지내기 위해 마련한 넓은 마루인 것이다. 많은 자손들이 함께 모여 의례를 행하는 공간이기에 양반집 마루는 커야 했다. 대부분의 옛날 집은 방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적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마루였다. 양반의 종가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다른 집에 비해 이 공간을 넓게 만들었고 그런 공간을 일반적인 집들의 마루와 달리 대청이라 불렀던 것이다.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개념이 지닌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위와 관련한 다른 사례를 다시 체크해 보자. 전라도 지역에는 탈춤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양반들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탈이라는 페르소나를 쓰고 양반을 조롱거리로 삼을 필요조차 없었던 공간이었다. 전라도 지역에는 양반 촌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해남 윤씨 집안의 경우에도 종가 집인 녹우당이 있기는 하였지만, 반촌을 찾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현실에서 한옥에 있는 마루를 대청이라고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마루라고 서술하고, 대청이라는 공간은 지식더하기 코너 정도에서 설명해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현상적인 같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개념이 지닌 맥락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맥락이 다를 수 있고,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교과서의 또 다른 사례를 통하여 개념을 체크해보자. 3-1학기 교과서 45쪽에는 강수량과 관련된 내용이 말풍선 안에 적혀 있다. 말풍선에는 ‘강수량은 눈, 비 등 땅에 내린 물의 양을 말합니다.’라고 강수량을 설명한다. 이 진술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땅에 내린 물의 양이라는 강수량 설명은 ‘어떤 지역에 내린 눈, 비 등 땅에 내린 물의 양’이라는 서술로 수정되어야 더 정확하다. 강수량을 측정해야 한다면, 그 지점을 특정해야 하므로, 어떤 지역에 내린 강수의 양을 강수량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옳다. 땅에 내린 강수의 양을 지칭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이 배우는 교과서이기에, 그들의 시선에서 맥락을 고려하여 진술을 상세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IV. 관점체크, ‘바라보는 방식’을 의심하다

사실이나 개념에 대한 체크가 사회교과서의 내용 서술에 기반 한 지역적인 사례로 이해가 가능하다면, 이 장은 ‘문화’와 ‘환경’이라는 보다 거대한 인식소를 사례로 들어 이것이 관점에 대한 차이에 있음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다문화에 대한 관점의 차이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는 인식이 보편이 되었고, 사회과교육에서도 일찌감치 다문화에 대한 논의와 언급을 무수히 시도하며 실천하고자 노력해왔다. 지금도 여전히 다문화 교육은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¹⁾ 다문화의 인식소(episteme)인 문화(culture)는 R. Williams가 영어에서 가장 복잡한 단어 가운데 하나로 꼽는 개념이다. 문화라는 용어는 여러 학문 분야나 서로 다른 사상 체계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복잡해진다. R. Williams는 이 복잡한 개념의 정의를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김성기·유리(역), 2010). 첫째, 지적, 정신적, 미학적 발달의 전체적인 과정을 말하는 독립적인 추상명사로서 18세기부터의 사용되어 온 정의이다. 둘째, 어떤 국민, 시대, 집단 또는 인간 전체의 특정한 생활양식을 가리키는 자립명사이다. 셋째, 지적, 특히 예술 활동의 실천이나 그로부터 탄생되는 작품을 가리키는 자립추상명사의 용법이다. 이 같은 세 가지 문

1) 박승규·홍미화(2012)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화에 대한 정의 가운데 두 번째 정의가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R. Williams는 문화에 대한 두 번째 정의인 ‘인간의 특정한 생활양식’이라는 것을 문화가 갖는 사회적 정의로 규정한다. R. Williams는 『기나긴 혁명』이라는 책에서 각각의 문화에 대한 정의를 다시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문화의 사회적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세 가지 의미로 나눈다. 문화의 사회적 정의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문화가 ‘특정한 삶의 방식의 표현’이라는 인류학적 주장이다. 두 번째는 문화가 ‘어떤 의미와 가치의 표현’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특정한 문화에 내재하거나 표출된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R. Williams가 제시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정의는 문화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관점이고 기본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박모 역, 1994).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R. Williams가 규정한 인간의 특정한 생활양식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지평을 펼쳐야 한다. 인간의 특정한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면, 결혼이주 여성이나 외국인의 생활양식만이 다문화 교육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오늘을 함께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양식이 다문화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R. Williams가 제시하는 문화에 대한 사회적 정의는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노동자, 홈리스, 성적 소수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다인종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접근이지만, 다문화는 처음부터 다양한 삶의 방식에 천착해야 했던 것이다. ‘하나의 문화’에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수많은 타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 그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이다(박승규, 2012).

다문화 사회는 인간이 살아가는 특정한 생활양식이 복수로 존재하는 사회이다. 인종적 다름이 있어 복수가 아니라, 같은 민족에서도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이 있어 복수라는 것이다. 지금의 다문화교육은 그들의 삶이 소외되어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인종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해되고, 진행되고 있는 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오늘을 소비하는 다양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은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즉 다문화 교육이 문화의 개념적 측면에 조금 더 충실하게 접근되었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을 소비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로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한 문화만이 다문화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같은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집단이 생산한 문화가 다문화이고 이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이것이 곧 우리 사회 구성원임을 소리 높여 외쳐도 듣지 않고 외면했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근본 이유이다. 다문화 교육에서는 우리와 그들이 모두 사회 구성원이며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나름의 존재이유를

부여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다문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와의 다름과 낯설음이 화두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생활양식이 화두이어야 한다. 그런 삶 가운데 다수의 삶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들이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들은 나와 우리와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그들의 삶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기에 그들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그렇기에 다문화 교육은 다인종 교육에 기반한 지금의 교육의 과정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는 어린이, 여성, 노인, 노동자,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 관점이 허용하는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중심의 이타적 다문화가 아닌, 인종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문화만이 아닌, 우리와 같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다문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문화라는 인식소를 통해 다문화 교육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관점이 되는 것이다.

2. 환경을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

환경과 페미니즘은 21세기를 대표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미래 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삶의 지표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는 것은 가치가 있으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친환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가는 교육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나타난 환경 인식은 어떠한가? 5-1학기 사회교과서 80쪽에는 친환경적인 표어를 만들고 교실에 붙이는 장면이 나온다.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제시된 것일 것이다. 표어의 사례로 제시된 것을 보면, ‘떨어지는 물 한 방울 절약하면 나라사랑’, ‘버려지는 물 한 방울 줄어드는 우리생명’, ‘깨끗한 물 지켜주고 오염된 물 걸러주자’ 등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물의 소비자인 우리들 모두가 물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사례이지만, 이 같은 환경에 대한 관점에는 환경개량주의적인 사고가 담겨있다.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인자도,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된 요인도 바로 ‘나’이고 ‘우리’임을 생각할 때 환경개량주의적인 사고가 갖는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오늘날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정말로 우리들 개개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기업이나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간과한 상태에서 이러한 우리의 문제인식이나 실천방향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학습자의 실천만을 유도하는 현상적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환경문제의 속성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일, 즉 환경 개량주의적 접근보다는 구조적이고 사회체계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D. Harvey는 오늘날의 환경문제가 환경을 담보로 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하나의 자본가의 집단과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자본가 집단의 갈등에서 이슈화된 것이라고 한다. D. Harvey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본다면, 우리의 시각, 즉 환경개량주의적인 관점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오히려 환경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알게 된다.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프레임을 통해 환경문제를 개인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생활습관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는 것 역시도 의심의 대상이다. 이 같은 프레임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 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해양생물과 해변의 파괴, 핵폐기물 처리이다. 반면에 식수오염, 대기오염 등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 Trugill, 1996).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일상적인 자신들의 삶터가 갖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보다도 매스 미디어를 통해 인식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더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다. 권력과 지식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지식이 권력의 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기제로 작동하는 오늘의 삶, 이러한 모습이 환경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그대로 담겨있는 것은 아닐까?

3. ‘지식 더하기’ 코너가 보여주는 관점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지식더하기 코너는 심화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을 것이다. 심화된 지식의 정도를 어디까지 정해서 보여주어야 할지를 함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사회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더하기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령, 6-2학기 사회교과서 125쪽에는 지구본과 세계지도에 대한 지식더하기 코너가 등장한다. 고등학교에서조차 다루지 않는 ‘도법’ 내용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음이 의아하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평면각으로 내려다보는 지도에 대해서는 지도를 읽는 것조차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지도를 만드는 도법에 대한 제시가 왜 필요한 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제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식을 더해주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오히려 이 부분은 학습자들이 지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외에도 사회교과서에는 지도와 관련하여, 내지는 지역의 위치와 관련하여 위도와 경도 좌표를 제시하는 내용기술이 유독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6-2학기 사회교과서 67쪽, 122쪽에서는 경도와 위도 좌표를 통해 위치를 제시한다. 초등학교 지리 학습에서 위치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리적 위치를 아이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옳은 가? 경도와 위도를 통한 위치가 학생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 까?를 고려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대륙이나 시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가르칠 수는 없을까?

V. 결 론

팩트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원으로부터 이 발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사실과 관련하여 오늘을 소비하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실이 사실인지도 의구심이 든다. 온갖 시뮬라크르(simulacre)가 지배하는 세상이기엔 팩트를 체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팩트를 체크하고, 나아가 개념과 관점을 체크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시뮬라크르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아는 것과 더불어 그러한 세상에서 다소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지식을 학습자에게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사회교과서에 등장하는 사실이나 개념 등에 대한 체크였지만, 이를 다루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구하는 사회과교육에 대한 많은 전제들에 대한 체크의 필요성이었다. 사회과를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 과연 정말로 실현가능한 상인지,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니?’, ‘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뭘 하는 거야?’ 라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접하게 되는 학교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 사회과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이다.

학교교육의 위상이 점점 낮아지는 현실에서 사회과교육은 더더욱 현실적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학(小學)’을 강조하고, ‘대학(大學)’을 가르치기를 주저했던 우리 조상들의 학문하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사회과 역시도 어쩌면 다시금 소학을 중심으로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상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사회과교육의 방향 또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소학이 사라지고, 대학만이 남은 학교 교육은 결국 배려와 연대의 교육이 아닌 갈등과 경쟁의 삶을 강화하는 듯하다.

〈 참고 문헌 〉

- 박승규·홍미화(2012), 다문화 교육에서 ‘다문화’의 교육적 의미, *사회과교육*, 51(3), 155-166.
 박승규(2012), 다문화 교육에서 다문화 공간의 교육적 의미, *문화역사지리*, 24(2), 111-122.
 김성기·유리(역), 2010, 키워드, 민음사(Williams, R., 1983, *Keyword: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Harper Collims Publishers Ltd).
 박모(역)(1994),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Storey, J. 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e theory and popular culture*)
 이재영(역)(1996), 환경문제의 결과 속:환경문제 해결의 걸림돌과 디딤돌(Trugill, S., *Barriers to a Better Environment: What stops us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Belhaven Press, London).
 최민우(역)(2014), 뉴스의 시대:뉴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문학동네.

<토론 1>

「팩트 체크를 넘어 관점 체크로」에 대한 토론문

유 종 열(공주대학교)

1. 왜 지금 ‘팩트 체크를 넘어 관점 체크로’ 인가?

학교 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육과정은 스킵과 시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는 학교 교육은 스킵과 시퀀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스킵은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로 심화해서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이며, 시퀀스는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학교 교육 현장에 있는 교육 전문가(이론가가 되었던 실천가가 되었던)는 끊임없이 스킵과 시퀀스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교사의 교육 활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해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명시한다면 수업 실천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에 대한 신념이나 학습자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교사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 지식이나 학습자들의 역할이나 능력에 대한 신념에 의해서 교수 내용을 선정하고, 교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 상황은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가르쳐야 할 사실은 무수히 많은데 교과서 지면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은 저자의 관점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정되고 조직될 수밖에 없다. Apple(1979)은 교과서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나 이념을 명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는 학습매체이자 학습활동의 주된 자료이며 학생들의 지식, 신념,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 많은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교과서 분석 연구에서도 사회교과서에 필자들의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박선미·우선영, 2008; 김소순·조철기, 2010; 박지훈·유종열, 2015)

이에 토론자는 ‘팩트 체크를 넘어 관점 체크로’라는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왜 ‘지금’ 인가? 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다. 이는 관점 체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한 선행 연구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이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어디이며, 어떠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 주제가 새롭게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2. 어떻게 ‘팩트와 관점’, ‘진실과 이미지’, ‘실재와 조작’ 을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교육의 최종 목표는 얇과 얇의 실천에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시뮬라시옹과 시뮬라르크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진실과 이미지 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들 역시 사회과 교육에서 시뮬라르크를 경계하고 보다 객관적인 지식을 학습자에게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생각을 묻고 싶다. 팩트와 관점, 진실과 이미지, 실재와 조작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아울러 연구자들은 오늘날 사회과 교육에서 소학(小學)이 사라지고 대학(大學)만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이는 배려와 연대의 교육이 아니라 갈등과 경쟁의 삶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의미와 근거는 무엇인지 독자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3. 팩트 체크와 관점 체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연구자들은 ‘팩트 체크를 넘어 관점 체크로’라는 수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의 상상을 하게 한다. 하나는 팩트와 관점이 동일 선상의 수평선 위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 두 개념을 보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관점이 팩트보다 상위, 혹은 높은 수준의 개념이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한다. 다른 하나는 이 둘은 인식론이나 존재론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이 둘은 서로 간에 넘을 수 없는 개념적 장벽이 존재하여 혼란 불가능한 개념으로 이미지화 된다. ‘넘어’의 의미를 연속된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절적인 개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4.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

분석 대상의 범위와 위계가 다소 혼란스럽다. 분석 대상을 살펴보면, 크게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는 것과 일반 교육관련 개념(?)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과서 내용 분석은 다시 교과서 내용의 개념적 오류를 찾는 것(Ⅱ-1. 경관과 건축물에 대한 오류, 2. 지명, 오류 아닌 오류, Ⅲ. 개념체크)과 교과서 구성 요소의 위상 혹은 의미를 분석(Ⅳ-3. ‘지식 더하기’ 코너가 보여주는 관점)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교육 관련 개념에 대한 것은 Ⅳ장의 ‘다문화’와 ‘환경’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분석한 것인데, 이 중 ‘다문화’에 대한 것은 일반론적(교과서 차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으로 접근한 것인데 반해, ‘환경’에 대한 것은 사회과 교과서에 반영된 관점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의 맥락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해 주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연구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김소순·조철기(2010),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및 편견 분석, *중등교육연구*, 58(3), 87-112.
- 박선미·우선영(2009),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국가별 스테레오타입, *사회과교육*, 48(4), 19-34.
- 박지훈·유종열(2015),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기술된 중앙아시아 내용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22(2), 59-72
- Apple, M. W.(1979). *Ideology and Curriculum*.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토론 2>

「미투 운동, 구조적 인권 침해,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토론문

이 태 성(세종국제고등학교)

〈미투 운동, 구조적 인권 침해, 그리고 인권교육〉라는 장원순 교수님의 글은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사회과교육 전공자에게 이론적이고 실천적 차원에서 많은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과 차별의 기제를 한국 사회의 미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원용하여 분석하고 있는 논의 전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인권 및 인권 교육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이 독자의 입장에서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미투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관찰자’적 시점에서,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감정’과 ‘정서’의 맥락에서 미투 운동의 의미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조심스레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1. 미투, 둔감한 사회에 대한 저항

혹자는 미투 운동을 혁명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근래의 미투 운동은 분명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차별과 현실은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폭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대응 양상이나, 해당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등에서 다소 정제되지 못한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문화적, 구조적 차별의 존재 혹은 역사적 누적 자체가 작금의 미투 운동의 동인이라고 보기에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준만 교수의 ‘민감이 죄인가?’(한겨레, 2018.3.11.)라는 제목의 칼럼은 미투 운동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미투 운동이 둔감한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고 정의합니다. 차별 그 자체일수도 있지만, 차별을 차별이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예민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더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미투 운동도 큰 맥락에서는 정의(올바름)에 대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민감성은 최근의 정치적 격동 속에서 시민들이 경험한 모종의 정치적 성취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공적인 환경에서 권력이 사유화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시민들 스스로가 다시 정치적 권력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미투 운동 이후,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폭로가 같은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도 같은 입장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2. 성적 자기 결정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미투 운동과 관련된 당사자는 정치적으로는 책임 추궁을 받았지만, 법적인 판단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법적 판단이 그러하겠지만, 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그 판단 기준이 더욱 엄밀해집니다. 미투 운동과 같은 경우 성폭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부합하는 경우만 인정할 것인지, 그 외 미투 운동의 다양한 사례들을 동일한 범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사실 적시의 명예 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 행위를 법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굳이 법적이 판단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이고 사회적인 판단에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성적 자기 결정성’을 침해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 결정성’은 사회과에서 말하는 시민성을 구성하는 핵심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자기 결정성이 강조된 이유는 사적 영역에서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의 자기 선택을 인정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결정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결정한 것’은 유/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도의 문제일까요? 만약에 유/무의 문제라면, 그것을 확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언어적, 비언어적 동의?) 만약에 정도의 문제라면, 어느 정도를 자기가 결정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성에 부합하여 인정된다고 보면서, 성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언제나 최소주의(최소 침해)의 원칙에 의거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점은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3. 몸(신체) 철학의 관점에서

발표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투 운동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주조된 몸과 영혼’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몸이 실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억압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몸 철학)은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기존의 관념 자체에 대한 거부를 넘어, 그러한 구분(구조)을 ‘해체’하여 다시 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신(마음)과 몸(신체)의 구도를 넘어, 몸의 반응 그 자체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에 해당하는 것, 즉 이성, 인지만으로는 부족하며, 감각, 감정과 같은 신체 반응적 요소가 결합된 ‘체화된 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표문에서 지적하는 주조된 몸과 영혼 역시 미투 운동과 관련한 어떠한 구조적(문화적) 요인일 수도 있지만, 저는 몸과 영혼(정신)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인식 체제(상징 코드) 자체가 그러한 구조적(기호학적)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투 운동에 대한 해결 방안이 인권에 대한 개념 혹은 객체화된 지식

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는 부분은 다시 전통적 인식 논리로 환원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모더니즘의 관점에서우리는 히잡을 착용하는 이슬람 여성들이 문화적으로 억압받고 차별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문화적 요소보다 이슬람 여성 자체에 주목하여 그녀들이 진정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혹은 보호를 받는다고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상(개념)보다 행위자(몸, 신체) 자체에 집중하는 흐름이 몸 철학의 기본 입장입니다.

4. 인권에서 인권 감수성으로

앞의 논의의 연속으로, 인권의 개념은 권리의 차원에만 한정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사실, 우리는 인권 침해 사례를 ‘인지적’으로 분별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야 할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미투 운동이 인권에 대한 개념적 지식 습득이 부족한 것에서 연유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콜버그와 같은 입장에서는 인지적 습득이 실천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며, 길리건과 같은 사람들은 배려와 같은 정서적 일치가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만약에 후자가 더 강조되는 사회라면, 인권의 개념은 인권 감수성의 개념을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감수성은 도덕 심리학자 Rest의 도덕 민감성(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인식하는 과정)의 개념에서 파생되어, “인권 상황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알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과정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발표문에서 인권(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는 학자로 인용되는 누스바움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주장하는 정의의 개념은 이러한 감수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주창한 ‘시적 정의(poetic justice)’라는 개념은 문학적(서사적) 상상력이 공적 추론(판단)의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상력이 곧 인간다움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5. Me Too와 With You의 상관 관계

오늘날 혁명과 같은 흐름을 보이는 미투 운동은 남성들에게 부끄러움(수치심)과 연대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스스로가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모순에 침묵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나는 당신과 함께 한다는 정서적 지지가 함께 표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팬스쿨’을 운운하고, 어떤 이는 갑자기 여권 운동가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미투의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되던 남성이 양면적 입장에서 있는 셈입니다.

누스바움은 <감정의 격동>이라는 책에서 ‘수치심’과 ‘혐오’라는 감정 역시 사회 권력이 특

정에게 강요하는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가령,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꼈나?’고 묻는 것은 적절한 물음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은 ‘분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반대로, 미투 운동의 폭로 대상이 된 사람들이 단순히 ‘혐오’의 대상으로 고착되는 것도 문제 해결에 유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혐오는 기피와 제거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어떤 구조적이고 왜곡된 문화적 굴레에서 묵인하였다는 사실로 수치심을 강요받고, 급기야 혐오의 감정이 양산되는 경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는 줄어듭니다.

어떻게 보면, 미투 이전이나 이후나 무언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말하지 않는 대상은 다르지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구조적이고 문화적으로 인권 의식이 형평을 이루면 문제는 해결이 될까요? 인간 사회가 존재하고, 사회에 권력이 작동하는 한 언제나 새로운 ‘미투’가 등장하진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미투’와 ‘위드 유’는 모두 공감을 전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차별 해소를 위한 우리의 교육적 지향이 인권에 대한 지식과 개념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마음으로 느끼는 공감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공감의 사회, 공감의 분위기 속에서 우선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무언가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정서적 토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미투에서 위드유로 이어지게 하는 ‘합리적 감정’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팩트 체크를 넘어 관점 체크로」에 대한 토론문

이 태 성(세종국제고등학교)

〈팩트 체크를 넘어 관점 체크로〉라는 두 교수님의 논의는 사회과 교육에서 사회 현상 탐구의 내용 및 방법의 전형으로 자리 잡아 온 기존의 ‘사실(문제)’, ‘가치(문제)’의 프레임을 넘어, ‘팩트’-‘개념’-‘관점’이라는 새로운 계열을 보여준 것으로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새로움(novelty)’과 ‘적절성(appropriate)’을 보여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팩트 체크로부터 시작하여 개념 체크로 이어지고 관점 체크로 확장되는 계열은 쟁점을 다루는 사회과 수업에서 시의 적절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가 더욱 풍부하게 전개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인간성’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더해 보고자 합니다. 제 논의 역시 이번 학술 발표회를 통해 하나의 관점으로 ‘체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사실이라기보다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것

일찍이 Engle은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에 대해 논쟁한다.”고 말할 적이 있습니다. 삶에서 당면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가치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회적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Durkheim 역시 사회적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Comte와 같이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그것을 직접 관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의 법, 제도, 규범과 같은 간접적 증거를 통해 사회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체크의 대상으로 팩트뿐만 아니라 개념과 관점을 상정하려는 기획은 사회적 사실의 의미에 더 깊숙이 다가가려는 시도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체크의 의미를 사실의 차원을 ‘묻고’, 개념과 맥락의 관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을 ‘의심’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는 것은 사회적 사실과 그러한 사실이 결정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반성’을 함께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성 교육의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적 사실을 다루는 사회과 교육이 팩트 체크의 교육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사회적 사실의 잠재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팩트, 개념, 관점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인가, 뉘비우스의 띠인가

일상생활에서는 사실과 가치, 혹은 팩트와 관점이 복합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 개념을 형성하고 그러한 개념이 중첩적으로 합의되면 하나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정의(justice)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 역시 불평등한 현실이라는 팩트가

실재하고, 공정 또는 공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관점에 터하여 형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팩트, 개념, 관점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실상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Hunt & Metcalf가 언급한 사실과 가치의 연속체(fact-value continuum)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쟁점은 사실과 가치로 이루어져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쟁점을 사실과 가치로 구분하여 탐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사실로 인식할 때는 어떤 가치가 반영되어 있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과 관련된 사실들을 연관시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직접 경험을 통해 증명하지 못했던 혹은 체득할 수 없었던 사실, 개념, 가치, 관점은 누군가의 언어를 매개로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문화 교과목에서는 ‘인간의 주관적인 의식이 개입되지 않고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내용을 진술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경험한 것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진술의 형태일 것입니다. 즉, 사실은 현상의 제시에 대한 진술이며, 가치는 현상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진술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Hunt & Metcalf 역시 사실(fact)은 ‘공통으로 작동하는 의미의 진술’로, 가치(value)는 주어진 상황에서, 공통으로 작동하는 의미를 갖지 않는 용어의 진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면, 팩트, 개념, 관점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 것인가가 궁금해집니다. 또는 어떠한 관계로 설명해야 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습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표현처럼 팩트, 개념, 관점은 하나의 맥을 이루지만, 서로가 근본적으로 갖지 않는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반대로, 순환 논리의 오류로 볼 수 있겠지만, 뫼비우스의 띠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상기 개념을 진술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면, 팩트에 대한 진술 속에 개념이 있고, 개념에 대한 진술 속에 관점이 있고, 관점에 대한 진술 속에 팩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담론에 대한 푸코의 관점 체크

이 발표문에서 가장 획기적인 워딩(wording)은 ‘관점 체크’라고 생각됩니다. 팩트 체크와 개념 체크에서의 체크의 의미가 ‘검증’ 내지 ‘증명’의 의미로 이해된다면, 여기서 관점 체크의 의미는 바라보는 방식을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부드럽게는 비판적 사고, 거칠게는 메타 인지와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Dewey의 반성적 사고의 개념이 연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관점 체크는 소크라테스식 방법론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 체크 너머에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령, 다문화와 환경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여, 관점 체크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나서

는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연구자가 원용한 푸코의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프레임을 보고, 그 이상의 논의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Marx와 Weber가 권력에 집중했다면, Foucault는 담론에 집중했습니다. 담론은 지식을 통해 구축되고, 그 자체가 권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관점 체크를 통해 다문화 및 환경 담론 내에서의 다양한 관점의 인정을 넘어, 담론 그 자체에 대한 체크(담론 체크)를 통해 누가 지식 담론을 규정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해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결과적으로 은폐된 의혹들을 들춰내는 이데올로기 비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러한 회의주의의 무한재생은 체크의 범위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학교 교육 현실에서 가능할지, 또는 적절한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4. 개념, 관점 체크를 넘어 ‘다시’ 팩트 체크로

팩트 체크가 사실의 차원을 묻는 것이라면, 개념 체크는 개념과 맥락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저는 개념 체크에서의 체크가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문화상대주의, 다문화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삼아 인종, 성, 성적 지향, 종교, 직업 등에 대한 차별이 모든 종류의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인 정치적 올바름 운동은 그 개념 자체의 부적절성 때문이 아니라, 개념 활용의 과도성 때문에 대중들의 반감과 거부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개념어가 그러한 개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행동을 풍자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어는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활용에 대한 적절성(실제성)도 중요한 체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개념 사용에 대한 팩트 체크도 필요한 셈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쟁점을 마주하는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얼마 전, 유명 정치인의 과거 행적이 시간대 별로 팩트 체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점(견해)은 그것이 무슨 중요한 결격 사유가 되느냐며 항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양쪽의 진실 공방이 계속 되었고,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관점의 설득력이 아니라, 팩트의 유무로 귀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팩트가 밝혀지면서 급기야 당사자가 사과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대목과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금 팩트 체크의 중요성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는 개념과 관점보다 팩트 자체가 가치 판단의 과정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회과의 시민성 교육은 다양한 가치 갈등의 상황에서 자신이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치 관점을 확립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내면화하여 다른 가치 갈등 상황에 적용하려는 일종의 ‘명료화’ 전략을 추구합니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보다 타당한 근거를 탐색하

여 자신의 논리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안하는 데에 열중합니다. 갈등이나 딜레마 상황에서는 대화적 방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언제나 옹호됩니다. 모종의 내용을 주입하려는 시도는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일찍이 Oliver & Shaver 역시 특정의 가치에 대한 교화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성을 구성하는 내용 요소, 적어도 도덕성의 차원에서 팩트가 될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는지 의심이 됩니다. 오늘날 사회과 교육에서 시민성에 대한 많은 견해(관점)가 주장되지만, 대부분은 학습자의 관점 혹은 견해의 형성을 강조하고, 학습자가 내면화할 수 있는 사실적 요소를 다소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개념과 관점이 중구난방으로 점철되는 오늘날, 어쩌면 개념과 관점에 대한 체크를 넘어 팩트에 대한 체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in fact...

사실(in fact)이란 의미는 일상에서는 ‘실제로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팩트는 단순히 ‘있었던 일’, ‘만들어진 사실’이라기보다, 사람의 ‘본심’ 즉, ‘인간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팩트 체크는 자신과 타자의 본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으로 재개념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거짓된 행태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진술이나 담론으로 자신들의 개념과 관점을 드러내지만, 마음으로 와 닿지 않는 언행이 즐비합니다.

시민성은 결과적으로는 인간성에 근거하여 발현하는 자질일 것입니다. 인간다움(인간성)이라는 가치에 근거할 때, 시민성이라는 모종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실천에서는 담론을 형성하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적이고 도구적 목적의 관점 형성 및 이에 대한 체크보다, 거짓이 없는 본심이라는 팩트 형성과 이에 대한 체크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MEMO
